

2022년 장기요양기관 이용료(10월 1일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 분		분 류	1일당 이용액 (원)	30일 기준	자부담(20%) (A)	31일 기준	자부담(20%) (B)
급 여	등 급 자	1등급	78,200	2,346,000	469,200	2,424,200	484,840 (월 15,640원 인상)
		2등급	72,550	2,176,500	435,300	2,249,050	449,810 (월 14,510원 인상)
		3등급	68,510	2,055,300	411,060	2,123,810	424,762 (월 13,702원 인상)
비급여 (C) 자부담 (100%)	식비: 3,500(3식) 간식: 1,000(2회)		12,500	375,000		387,500	
	상급병실료: 5,000(1일)		5,000	150,000		155,000	
구 분				산출 범위			
				A+C(30일)		B+C(31일)	
월 총액	일반(20%)			1등급 : 844,200 2등급 : 810,300 3등급 : 786,060		1등급 : 872,340 2등급 : 837,310 3등급 : 812,262	
	상급실 이용시			1등급 : 994,200 2등급 : 960,300 3등급 : 936,060		1등급 : 1,027,340 2등급 : 992,310 3등급 : 967,262	
	경감대상자(12%)			1등급 : 656,520 2등급 : 636,180 3등급 : 621,636		1등급 : 678,404 2등급 : 657,386 3등급 : 642,357	
	경감대상자(8%)			1등급 : 562,680 2등급 : 549,120 3등급 : 539,424		1등급 : 581,436 2등급 : 567,424 3등급 : 557,405	

※본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